

한국 사서직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ing Personnel System of Librarianship in Korea

윤 희 윤(Hee-Yoon Yoon)*

목 차

- | | |
|-----------------------|----------------------|
| 1. 서 론 | 3. 2 학예연구직제의 분석과 불만 |
| 2. 기존의 사서직제 개선연구와 한계 | 3. 3 기록관리직제의 등장과 논의 |
| 2. 1 1970~80년대의 개선모형 | 4. 한국 사서직제 개선방안의 제안 |
| 2. 2 1990년대의 개선모형 | 4. 1 사서직제 개선방안의 기본원칙 |
| 2. 3 2000년 이후의 개선모형 | 4. 2 사서직제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
| 3. 사서직제 및 관련 전문직제의 분석 | 5. 결론 및 제언 |
| 3. 1 사서직제의 변천과 문제점 |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사서직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5가지의 대안(현행 직제를 유지하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사서직렬을 행정직군에서 분리하여 단독직군으로 전환하는 방안, 사서직과 관련 직종을 뮤어 독립직군으로 신설하는 방안, 사서직을 학예직군 아래의 연구직렬로 이속시키는 방안, 그리고 복수 직군화하는 방안)을 상정하여 각각의 논거, 장점과 단점, 실현가능성 등을 정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3안(사서직, 학예직, 기록관리직을 통합한 가칭 '기록문화직군 또는 기록정보직군'의 신설)을 한국 사서직제의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new personnel system(classification of public position) for librarianship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five alternative plans are analysed with respect to the grounds of an argument, merits and demerits, and its realization. In conclusion, the 'record culture group' or 'record information group'(tentative name), that is, a single group brought together librarian, curator, and archivist is the best alternative to establish a professional identity and social status of librarian in Korea.

키워드: 사서직제, 사서직 공무원, 도서관 인사제도, 도서관경영

Librarianship, Library Profession, Library Personnel System, Librarian Position System, Library Administration

* 대구대학교 문현정보학과 교수(yhy@daegu.ac.kr, http://biho.daegu.ac.kr/~yhy/)
논문접수일자 2005년 8월 9일
제재확정일자 2005년 9월 10일

1. 서 론

도서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문화적 시설을 대표하여 왔으며, 사서직은 도서관을 성장·발전시키는 주역이다. 그래서 문화 선진국 일수록 자료와 이용자의 연결고리인 사서의 양성과 전문화에 주력하여 왔다. 부언하면 국가마다 역사적 궤적, 정치체제, 사회제도, 교육시스템, 문화정책, 관련법제, 조작문화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사서의 역량강화를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증대의 요체로 인식하여 사서직의 전문성을 법제와 정책으로 담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지난 반세기 동안 도서관의 양적 확충이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발적 요인(빈약한 인프라, 부실한 장서개발과 보존기능, 대출위주의 소극적 정보서비스, 학부교육에서 발원한 사서집단의 취약한 주제 전문성 등)과 외생적 요인(정부 및 행정관료의 물이해, 전문성을 저해하는 법제장치, 내면화되지 못한 대중들의 이용문화, 저수준의 사회적 인식도, 인터넷의 등장에 따른 자료수집 및 제공 주체로서의 독점적 지위의 약화, 디지털 지상 주의 등)으로 인하여 사서직의 존립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국내의 사서직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행정직군에 예속되어 있으며, 상한직급도 다른 직종에 비해 낮다는 사실이 반증한다.

그 배경과 이유는 여러 각도에서 언급할 수 있고 논리적 당위성도 주장할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서직≠행정직'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법리상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 '공립공공도서관의 사서직 관장제'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실정법은 사서직을 행정직의 아류로 규

정하고 있다. 또한 상한직급의 상대적 차별은 사서직의 평가절하와 더불어 승진적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므로 내발적 내지 외생적 요인의 선후관계와 인과성을 불문하고 현행 사서직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논급된 선행연구, 관련문건 및 법제를 배경정보로 삼아 국내 사서직 및 관련 전문직의 실상을 분석하고 사서직제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록 사서직제가 취약한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충하고 저락한 사회적 위상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해법은 아닐지라도 도서관의 핵심기능을 강화하고 사서직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며 양질의 정보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장치이다. 사서직의 전문직성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도서관의 충실회를 통한 지식강국화가 불가능하고, 정보문화의 복지도 구현할 수 없다. 그 요체가 정언적 명제인 동시에 전향적으로 개편해야 할 사서직제이다.

2. 기존의 사서직제 개선연구와 한계

국내에서 사서직제가 마련된 이후에 현재까지 개선방향을 제안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선행 연구 및 견의안은 상당히 많다. 그 가운데 주목 할 만한 몇 가지를 연대별로 구분하여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2. 1 1970~1980년대의 개선모형

먼저 현규섭(1971, 8-15)은 사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2가지의 사서직제 개선방안을 <표 1>

〈표 1〉 사서직제 개선방안(현규설 안)

구 分		제1안		제2안	
편제	직군	행정		학사	
	직렬	행정	사서	사서	사서
계급	1	관리관		사서관리관	
	2	갑류	이사관	사서감	사서관
		을류	부이사관	부사서감	부사서관
	3	갑류	서기관	사서관	사서연구관
		을류	행정사무관	사서관보	사서연구관보
	4	갑류	행정주사	사서	사서
		을류	행정주사보	사서보	사서보
	5	갑류	행정서기	사서서기	사서서기
		을류	행정서기보	사서서기보	사서서기보

과 같이 제안한 바 있다. 하나는 사서직을 행정직군에 그대로 두되 급류를 1급까지 부여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사서직을 학사군에 편입시키고 1급까지 부여하는 방안이다. 그 중에서 제2안을 최종안으로 채택하여 문교부에 상신한 바 있다.

다음으로 유동열(1978, 221)은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대학사서는 이를 전공유무에 따라 주제전문사서와 일반사서로 구분하여 전자는 교수직이나 교육연구직 등 별정직에 속하게 하고 후자는 일반직에 그대로 두되 학사직군에 속하게 하거나 단일직군으로 하고 편사연구직렬이나 학예연구직렬과 같은 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였다. 요컨대 주제전문성을 기준으로 사

서직의 복수 직군화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손정표 교수(1980, 37-54)는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표 2〉와 같이 사서직렬을 행정직군에서 독립시켜 문헌관리직군(또는 정보관리직군)으로 하고, 3원화(보통지방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집행기관인 교육위원회, 문화공보부의 문화원)되어 있는 도서관의 소속청을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일원화하며, 사서직의 상한직급을 1급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1986년에는 국립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사서직제 개선방안을 〈표 3〉과 같이 독립직군으로 전환하고 직급을 1급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제안하였다(1986, 15-22).

〈표 2〉 공공도서관의 사서직제 개정안(손정표 안)

공무원 구분	직군	직렬	직급									
			1		2		3		4		5	
			갑	을	갑	을	갑	을	갑	을	갑	을
현 행	국가	행정	사서				사서관	사서	사서보	사서서기	사서서기보	
	지방	행정	사서				지방 사서관	지방 사서	지방 사서보	지방사서 서기	지방사서서 기보	
개 정 안	국가	문화 관리	문화 관리	문화 관리관 이사관	문화 관리 부이사관	문화 관리 서기관	문화 관리 사무관	문화 관리 주사보	문화 관리 주사보	문화 관리 서기	문화 관리 서기보	

〈표 3〉 국립대학도서관의 사서직제 개정안(손정표 안)

구분	직군	직렬	직급									
			1	2	3	4	5	6	7	8	9	
현행	국가 공무원	행정	사서				사서관	사서관	사서	사서보	사서서기	사서서기보
	지방 공무원	행정	사서					지방사서관	지방사서	지방사서보	지방사서서기	지방사서서기보
개정안	국가 공무원 (혹은 문현 정보관리)	정보관리 정보관리 정보관 정보관리 이사관 정보관리 부이사관 정보관리 서기관	정보 관리 정보 관 정보 관리 이사 관 정보 관리 부이 사관 정보 관리 서기 관									

넷째, 한상완 교수(1981, 3-18)는 전문도서관을 대상으로 수석사서, 책임사서, 사서보조원으로 구분하는 직제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1987년에는 도서관 전문요원 양성제도의 개선을 비롯한 인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그 골자를 간추리면 학부교육의 부실에 따른 국가고시제의 도입, 행정직군에 예속된 사서직렬의 전문사서직군화 및 상한직급의 상향 조정(4급에서 2급 이상으로), 대학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전문직 부관장제 도입 등이다 (1987. 5-23). 특히 전문사서직군화에 따른 직급모델의 제안내용을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다섯째, 사서직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한 단체

로는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가 유일하다. 〈표 5〉와 같이 1982년에는 행정직군 하의 사서직렬을 학예직군의 연구직렬로, 1988년에는 사서직군의 신설을 각각 문교(교육)부에 제안하였다 (國立大學圖書館協議會 2004, 171).

2. 2 1990년대의 개선모형

이두영 교수 등(1990, 169-171)은 문화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에서 사서직의 독립 직군화 및 연구직군화 방안을 각각 〈표 6~7〉과 같이 제안하였다. 요컨대 '현행 행정직군 산하에 있는 사서직렬을 사서직군(혹은 문현관리직군이

〈표 4〉 사서직급 개정안(한상완 안)

직급	2	3	4	5	6	7	8	9
현행	-	-	사서관	사서관	사서	사서보	사서서기	사서서기보
개정안	전문사서관	부전문사서관	사서연구관	사서관	사서	사서보	사서서기	사서서기보

〈표 5〉 사서직제 개선방안(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안)

건의일자	건의내용	건의안의 논거	비고
1982. 9. 29	사서직렬을 행정직군으로부터 학예직군의 연구직렬로 전환하는 동시에 최상직급을 최소한 3급까지 상향 조정	사서직 업무는 내용이나 성격상 교육 및 연구적 기능을 가지며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직종인데도 비연구직렬이며, 최상직급이 4급으로 낮아 유능한 사서직의 확보가 곤란하여 업무의 질적 저하 초래	건의
1988. 7. 8	사서직군의 신설	-	논의

〈표 6〉 공공도서관의 사서직제 개정안(이두영 등, 사서직 공무원의 경우)

구분	직군	직렬	직급								
			1	2	3	4	5	6	7	8	9
국가 공무원	사서 (또는 문현 관리)	사서 (또는 문현 관리)	사서감 (또는 문현 관리 이사관)	사서감 (또는 문현 관리 이사관)	부사서감 (또는 문현 관리 부이사관)	사서관 (또는 문현 관리 서기관)	사서관 (또는 문현 관리 사무관)	사서 (또는 문현 관리 주사)	사서보 (또는 문 현관리주 사보)	사서 서기 (또는 문현 관리서기)	-
지방 공무원	사서 (또는 문현 관리)	사서 (또는 문현 관리)	-	지방 사서감 (또는 지방 문현관리 이사관)	지방 부사서감 (또는 지방 문현관리부 이사관)	지방 사서관 (또는 지방 문현관리 서기관)	지방 사서관 (또는 지방 문현관리 사무관)	지방 사서 (또는 지방 문현관리 주사)	지방 사서보 (또는 문 현관리주 사보)	지방 사서 서기 (또는 문현 관리서기)	-

〈표 7〉 공공도서관의 사서직제 개정안(이두영 등, 연구직 공무원의 경우)

안	구 분	직 군	직 력	직급							
				1급 상당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1안 (독립직군의 경우)	국가공무원	사 서 (또는 문현관리)	문현연구	-	문현연구관			문현 연구사			
	지방공무원	"	"	-	지방문현연구관			지방문현연구사			
2안 (학예직군 산 하의 경우)	국가공무원	학 예	학예연구	-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편사연구	-	편사연구관			편사연구사			
			문현연구	-	문현연구관			문현연구사			
	지방공무원		학예연구	-	지방학예연구관			지방학예연구사			
			편사연구	-	지방편사연구관			지방편사연구사			
			문현연구	-	지방문현연구관			지방문현연구사			

나 정보관리직군)으로 독립시켜 국가공무원은 1급까지, 지방공무원은 2급까지 사서직급을 상향조정하거나, 사서직을 연구직에 편입시켜 독립직군 또는 학예직군 산하에 문현연구직렬을 신설하고 문현연구관(5급~2급 상당)과 문현 연구사(7급~6급 상당)로 구분하여 타전문직과 동일한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시키는 방안이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의 보고서(1993, 212)는 사서직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현재 「국가공무원임용령」이나 「지방공무원임용령」이 함께 사서직을 행정직군 속의 직렬로 하고 있으면서 최고 4급까지 밖에 승진하지 못하게 하여 놓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사서

직은 전문분야로서 우대받아야 하며, 그 수가 대폭 늘어날 것이며, 또 대규모의 도서관들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사서직의 직급은 4급 이상 적어도 2급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자면 행정직군 속에 남아 있는 한 다른 직렬들과의 형평상 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새로 사서직군을 신설하는 경우, 그 속에 3개 정도의 직렬을 두어야 할 것이며, 문현사서, 정보사서, 음악사서 등을 한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요컨대 사서직군의 신설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손정표 교수(1994, 53-54)는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다시 2개안을 제시하였다. 제1안은 복수 직군화(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

서는 교수직, 학사학위 이하의 소지자는 현재의 행정직군에 잔류)이며, 제2안은 학사학위 이상의 1·2급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직원을 연구직에 편입시키되 독립 직군화하거나 학예직 아래에 '문현연구직렬'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2. 3 2000년 이후의 개선모형

먼저 한국행정연구원(2003, 234)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개편 및 인력운용 방안을 제안한 연구보고서에서 '현행 행정직군 아래 사서직렬로 편성되어 충원되는 사서직을 사서직군으로 독립시키고 직렬·직류에 주제전문사서를 명시하여 주제전문사서 채용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한국도서관기준(2003, 8)은 "공공 도서관의 사서직은 행정직군 산하의 다른 직렬과 달리 정보수집·가공 및 제공, 주제분석, 연구·조사, 교육 등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행정직군에서 분리하여 사서직군으로 독립시키고 그 직급도 국가공무원 1급, 지방공무원 2급까지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4, 132)은 '도서관 전문성 강화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현행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의 구분은 사서업무의 전문성 정도와 적절히 대응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자격증의 등급과 실제 업무간에 큰 괴리를 보임으로써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채 운영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행정직군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서직을 전문직군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서직의 전문직군화가 독립직군을 의

미하는지, 아니면 연구직군으로의 이속을 지칭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상에서 분석한 국내 사서직제 개선방안의 제견해는 2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직군 및 직렬의 편제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직급에 관한 것이다. 전자는 학사·학예·정보관리·문화정보·사서·전문사서·독립·전문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으나, 핵심내용은 사서직의 독립 직군화 내지 연구직군화이다. 후자는 사서직의 상한 직급을 현재의 4급에서 1급 내지 2급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마다 사서직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을 뿐, 대다수는 그 당위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매우 취약하거나 궁색하다.

3. 사서직제 및 관련 전문직제의 분석

사서직제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 공무원의 직제를 지칭하며, 일반적 공무원의 그것과 궤적을 함께 한다. 따라서 사서직제의 변천과정과 더불어 관련된 전문직제를 연계·분석할 때, 사서직제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3. 1 사서직제의 변천과 문제점

1948년 11월 17일자로 제정된 「인사사무처 규정」(대통령령 제30호)은 국내의 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최초의 법규이다. 이 규정의 제5조는 공무원의 직종을 구분하지 않은 채 직급을 1그1(차관보)~15급(技員, 巡警)까지 나누었으나 사서직은 명시하지 않았으며, 1949년 2차례 개정(대통령령 제72호와 제85호)된 후 동년

11월 5일자로 폐지되었다.¹⁾ 그리고 이 규정을 대체한 법령이 1949년의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08호)인데, 제11조의 '별표 1'은 공무원을 직군이나 직렬로 분류하지 않고 직급만 규정하였으며, 사서직도 3급 갑류와 을류에 '사서관'을, 4급 갑류와 을류에 '사서'를 명시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이라는 법적 신분을 갖게 되었다.

이어 1950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436호)에서도 역시 직군 및 직렬은 도입되지 않았으며, 사서직의 경우 3급 갑류 및 을류의 '사서관'은 그대로 둔 반면에 4급 갑류 및 을류의 '사서'는 폐지되었다. 1961년 4월 15일에는 종전의 「공무원임용령」을 폐지하는 대신에 새로운 「공무원임용령」(국무원령 제240호)을 제정하면서 국내 최초로 〈표 8〉처럼 '직계 - 직부 - 직군 - 직렬'로 이어지는 분류체계를 도입하였다. 이 법령의 제33조(직종표)는 '공무원의 직계별, 직부별, 직군별, 직렬별, 급별, 류별 직종을 '별표 1'과 같이 규정하였다.²⁾ 즉, 2개 직계(사무계, 기술계)로 대별하여 사무계는 다시 3개 직부(일반행정, 재정경제, 외무)로 나누었으며, 일반행정직계는 9개 직군(행정, 법무, 검찰사무, 형무, 공안, 학예,

윤류, 교정, 방송)으로 구분하였다. 사서직은 학예직군의 7개 직렬(편수, 교무, 학예, 사서, 국학, 연예, 통역) 가운데 하나로 편성되었으며, 직급별 명칭은 3급 갑류를 '사서관', 3급 을류를 '사서관보', 4급 갑류를 '사서', 4급 을류를 '사서보'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사서직제는 1963년 5월 29일 「공무원임용령」이 각령 1317호로 대체되면서 행정직군으로 이속되었다. 직명은 3급 갑류를 사서관(4급), 3급 을류를 사서관보(5급)로 구분하고 그 동안 없었던 5급 갑·을류(현재의 8~9급) 직급을 신설하였으며, 그 체계를 9등급으로 세분하여 직급별 직명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1970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5449호)에서는 사서직의 최상위 직급인 4급을 5급으로 낮추었다. 그 후 1981년 6월 10일자 개정령(대통령령 제10345호)에서는 최상위 직급이 4급으로 환원되었으나 1996년부터 복수 직급제를 시행함으로써 사서직의 위상은 다시 약화되었다. 그리고 직급별 직명은 1991년 6월 27일자로 개정된 임용령(대통령령 제13400호)에서 변경된 아래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법률 제7187호) 제

〈표 8〉 「공무원임용령」(국무원령 제240호)의 직제

직계	직부	직군	직렬	직급							
				2급		3급		4급		5급	
				갑	을	갑	을	갑	을	갑	을
사무	일반 행정	일반 행정	행정 부이사관 학예관 사서관	행정 부이사관	행정 서기관	행정 사무관	행정 주사	행정 주사보	행정 서기	행정 서기보	
		학예		학예관	부학예관	학예관보	학예사	학예사보			
		사서		사서관	사서관보	사서	사서보				

1) 이 규정은 1949년 12월 15일자로 대통령령 훈령으로 바뀌어 다시 제정되었다.

2) 직계나 직부는 직군의 상위개념이다.

4조(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8416호) 제3조 제1항 '별표 1'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6786호)의 제4조(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8312호) 제3조 제1항 '별표 1'에 규정된 사서직 공무원의 직급 및 명칭은 〈표 9〉와 같다.

상술한 사서직 공무원의 분류체계와 직급 및 직명의 변천과정을 요약하면 〈표 10〉과 같다. 사서직군은 1949년의 「공무원임용령」에서 단일직군이었다가 1961년 개정법령에서 학예직군에 편입되었으며, 1963년 이후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행정직군에 예속되어 있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사서직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개

〈표 9〉 사서직 공무원의 직급 및 명칭

구분	직군	직렬	직급								
			1	2	3	4	5	6	7	8	9
국가 공무원	행정	사서	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	사서 서기관	사서 사무관	사서 주사	사서 주사보	사서 서기	사서 서기보
지방 공무원	행정	사서	지방 관리관	지방 이사관	지방 부이사관	지방 사서 서기관	지방 사서 사무관	지방 사서 주사	지방 사서 주사보	지방 사서 서기	지방 사서 서기보

〈표 10〉 사서직 공무원의 직제 변천과정

구분	직군	직급							비고
		4급 (3급 갑류)	5급 (3급 을류)	6급 (4급 갑류)	7급 (4급 을류)	8급 (5급 갑류)	9급 (5급 을류)		
1949. 11. 5 (대통령령 제208호)	없음	사서관	사서관	사서	사서				· 신설
1950. 12. 30 (대통령령 제436호)	"	사서관	사서관						· 6~7급 삭제
1952. 8. 16 (대통령령 678호)	"	사서관	사서관	사서	사서				· 6~7급 부활
1961. 4. 15 (국무원령 240호)	학예	사서관	사서관	사서	사서보				· 학예직군에 편입 · 7급 직명 변경
1963. 5. 29 (각령 1317호)	행정	사서관	사서관보	사서	사서보	사서 서기	사서 서기보		· 행정직군에 편입 · 8~9급 신설 · 5급 직명변경
1970. 12. 31 (대통령령 5449호)	"		사서관	사서	사서보	사서 서기	사서 서기보		· 4급 삭제 · 5급 직명변경
1977. 9. 14 (대통령령 8691호)	"		사서관	사서	사서보	사서 서기	사서 서기보		· 9급 직명 변경
1981. 6. 10 (대통령령 10345호)	"	사서관	사서관	사서	사서보	사서 서기	사서 서기보		· 4급 부활
1991. 6. 27 (대통령령 13400호)	"	사서 서기관	사서 사무관	사서 주사	사서 주사보	사서 서기	사서 서기보		· 직명변경

선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사서직급의 경우, 1949년의 법령에서는 최상위 및 최하위 직급이 각각 3급갑(현재의 4급)과 4급을(현재의 7급)이었으나 1970년에 개정된 임용령에서는 최상위 직급이 오히려 3급을(현재의 5급)로 하향 조정되었다. 1981년에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은 1990년) 직급체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환원되기는 하였으나, 1991년에 개정된 임용령에서 사서직의 최상위 직급을 4급(사서서기관)으로 제한함으로써 다른 전문직종에 비하여 차별 대우하고 있다. 그 동안 도서관계는 사서직군의 독립신설이나 학예직군 내의 연구직렬로의 이속과 함께 최상위 직급을 최소한 2급까지 상향 조정할 것을 수 차례 건의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3. 2 학예연구직제의 분석과 불만

학예직 또는 학예연구직(curators)은 박물관·미술관 등의 소장품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전문가 내지 직종을 말한다. 이에 대한 최상위 법령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법률 제06904호)이며, 제6조에서 규정한 '학예사'가 국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 근무할 경우에 그들의 법적 신분은 각종 공무원 관계법령과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규정」을 적용받는다.

다시 말해서 학예직은 박물관 내지 미술관 등의 소장자료를 다루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각종자료를 취급하는 사서직이 행정직에 편성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연구직에 분류되어 있다. 그러므로 학예직의 모든 인사제도(계급체계, 채용, 근무평정, 승진, 대우

등)는 연구직 공무원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르며, 공직상 분류체계는 '경력직 - 일반직 - 연구직 - 학예직군 - 학예연구직렬 - 학예관·학예사'로 집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예직 공무원이 되려면 관련법령이 규정하는 학예사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박물관및미술관법」 제6조 제2항은 '학예사를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박물관및미술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98호) 제3조(학예사 자격요건 등)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은 <표 11>과 같다. 정학예사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의 서류심사로 거쳐 문화관광부장관 명의의 자격증을 부여받는 반면에 준학예사는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경력심사를 거쳐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2000년 3월부터 국가자격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02년 말까지 발급된 자격증은 3급 정학예사가 307명, 준학예사가 20명이다.

이처럼 학예사 국가자격제도는 그 시행의 역사가 매우 일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제도 자체와 운영상의 폐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으며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우선 혁신한 현행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새로운 박물관 전문직종 분류 및 자격증별 응시자격의 조건이 제시되었는데, 그 골자는 <표 12>와 같다(김병모 등 1999, 46-48).

다음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은 행정직과 학예직의 갈등 내지 행정직의 독점과 독단적 행위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 2004

〈표 11〉 학예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등급	자격 요건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립중앙박물관, 국·공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공립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과 박물관·미술관학예사운영위원회가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등록된 대학박물관·미술관 및 외국박물관 등의 기관 중에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에 대한 전문가의 실사를 거쳐 인정한 기관(이하 "경력인정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 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급 정학예사	1.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 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2.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 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
준학예사	1.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 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표 12〉 자격증별 응시자격의 조건(안)

자격증 구분		응시 자격조건
1급 정학예사	연구원 교육원 보존전문가 자료관리원	· 박사학위 취득자 · 2급으로 5년간 박물관에 재직한 자
2급 정학예사	연구원 교육원 보존전문가 자료관리원	· 석사학위 취득자 · 3급으로 3년간 박물관에 재직한 자
3급 정학예사	박물관 전문사	· 4년제 대학 졸업자 · 준학예사로서 2년간 박물관에 재직한 자
준학예사	준박물관 전문사	·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4년간 박물관 인턴직으로 재직한 자 · 고교 졸업 후 6년간 박물관 인턴직으로 재직한 자

년 8월 9일자 세계일보에 '국립현대미술관 독립 시켜야 개혁 가능'이라는 제하에 비판한 다음의 대목은 학예직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표출한 것으로써 사서직을 연구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도서관계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행정자치부의 일방주의에 대한 미술계의 분노는 이제 서서히 양비론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동

안 과천이 얼마만큼 미술계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는지가 드러나는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양비론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시각이다. 과천은 학예직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신뢰받지 못해온 과천은 행정직과 학예직의 비정상적인 역관계 속에서 굴려온 비정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89명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62명이 일반행정직이라는 게 근본적인 문제다.

이러한 직제의 비효율성은 책임운영기관으로 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당장 행정직 중심에서 학예직 중심으로 직제개편을 실행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그 어떤 개혁논의도 공허한 협소리에 불과하다.

3. 3 기록관리직제의 등장과 논의

국내에서는 아카비스트(archivist)가 기록관리사, 기록물관리사, 기록관리전문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기록보존인, 고문서 담당관, 문서보존 전문요원, 문서전문가 등으로 역청되고 있다. 그러나 아카비스트의 법적 용어는 3가지의 키워드(기록물 + 관리 + 전문요원)로 구성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다.

1999년 1월 29일에 제정·공포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5709호) 제2조 제2항은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로, 제3항은 기록물관리를 "기록물의 수집·보존·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공공기관이 생산·수집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전술한 학예직은 이미 연구직 공무원으로 법제화 과정을 거쳐 배치·관리되고 있는데 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공직분류상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가 등의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 배경은 1999년초에 법률이 제정된 데 이어 동년 12월 7일에 시행령(대통령령 제16609호)이 공포되었기 때문이다. 부언하면 법률 제25조 제1항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의무배

치를 강제하였고, 제2항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및 배치인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각호는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②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③ 검찰총장이 정하는 검찰청 소속공무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④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⑤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찰공무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이러한 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도 체계적으로 양성되기 시작하였다. 그 방식은 대학의 교육기관 및 국가의 전문연수기관에 의한 양성교육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러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수여하는 자격제도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컨대 미국은 아카비스트협회(SAA :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가 설립한 비영리단체인 기록관리자격 아카데미(Academy of Certified Archivists)에 의한 자격제도를, 영국은 민간차원의 아카비스트협회(SoA : Society of Archivists)가 주최하는 프로그램(관리자 과정은 1년, 보조수리과정은 6개월)을 수료한 자에게 각각 아카

이브 관리자 자격과 보존수리자격을, 프랑스는 국립고문서학원(Cole National de Chartes) 졸업자에게 고문서학자(Archiviste Paleographe)라는 칭호를 수여하며, 중국은 국가당안국과 노동인사부에 의한 5단계의 당안전문직³⁾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정부가 인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4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요원 배치시한을 2004년말까지'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물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특정적·별정적 공무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2004년말, 지자체는 2006년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은 2008년말, 기타 공공기관은 2010년말까지 각각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기득권을 용인하고 있다. 또한 법률 제40조 제3항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록물관리기관 종사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보직 발령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후의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성 확보를 유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격증을 취득하여 신규로 임용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기득권을 인정받은 기존의 공무원(일반적·특정적·별정적), 그리고 기록물관리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교육

과정을 거쳐 전문요원으로 인정받는 자 등은 공직분류상 어느 직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속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현재 까지는 별도의 직군이나 직렬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행정직군에 속한다. 그래서 한국기록학회가 주최한 '제3회 기록학 심포지움'에서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직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 가운데 핵심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조영삼 2002, 62).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제외)에 직렬 혹은 직류를 신설하는 즉, 행정직군에 '기록관리직렬'을 신설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럴 경우는 아마 기록서기보(9급) 내지 기록서기관(4급)의 직급 및 계급으로 구분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안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기록물 관리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에 대해 규정해 놓았다. 그 자격 제1의 조건이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이다.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가 임용시험을 통해 9급 내지 7급의 공무원이 되려고 할 것인가? 더욱이 전문성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행정일반의 직군에 말이다. … 따라서 연구직에 새로운 직렬을 신설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러한 주장에 합치하는 실정법이 「국회인사 규칙」(국회규칙 제00123호)이다. 이 규칙 제4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제2항은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3) 노동인사부와 국가당안국의 통지에 따르면 그 능력에 따라 管理員(初級職務), 助管理員(初級職務, 助手級), 館員(中級職務, 講師級), 副研究館員(高級職務, 助教授級), 研究館員(高級職務, 教授級)의 5단계 직명을 인정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이하 '연구직 공무원'이라 한다)의 계급은 연구관과 연구사로 구분하고,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 2'에서 규정함으로써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연구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요컨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공직상 분류 체계는 '연구직군 - 기록연구직렬 - 기록연구직류'로, 직급 및 계급은 '기록연구관과 기록연구사'가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기록관리연구직렬의 출발계급인 기록연구사의 자격요건은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소지자, 7급 이상의 타직군 공무원 중 기록연구직으로의 전직을 신청한 후에 기록물관리부서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쌓고 전직시험에 합격한 자로 제안하고 있다.

4. 한국 사서직제 개선방안의 제안

4. 1 사서직제 개선방안의 기본원칙

도서관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회자되는 사서직은 매우 포괄적이고 다의적인 용어이다. 사서직제는 '사서 + 직업 + 제도'의 합성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스템, 자격제도, 인사제도 등을 포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용어의 개념과 범위, 대상과 한계, 필요성과 목적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을 포함하는 사서직제 개선방안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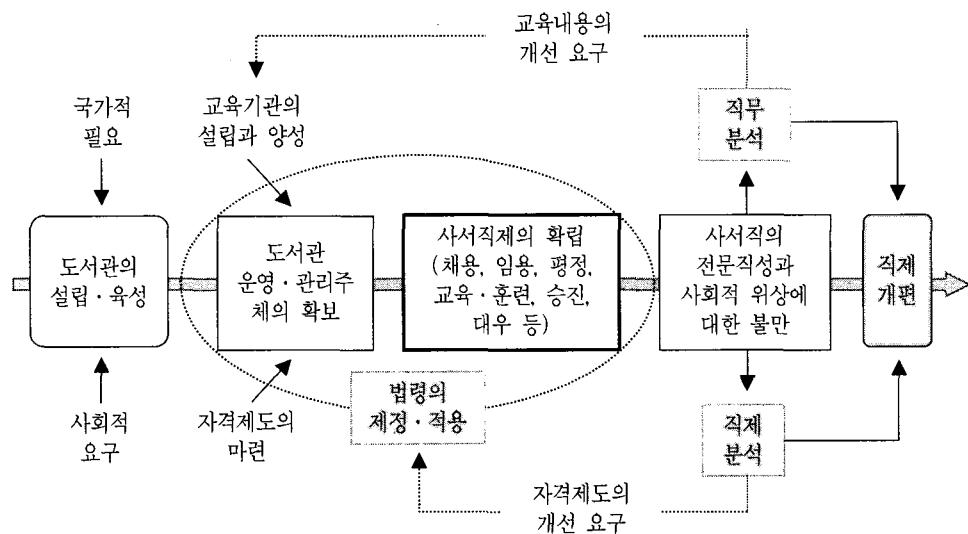
① 사서직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을 비롯한 각종 정보자료실에서 근무하는 사서직원을 의미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사서직

공무원, 즉 국가공무원(NCS)과 지방공무원(LCS)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기타 사서직으로 근무하는 준공무원 및 비공무원의 직제도 대체로 사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정한 관계법령을 적용하거나 준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모든 사서직원이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② 사서직제는 <그림 1>과 같이 도서관의 설립·육성에서 출발하여 교육기관의 설립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한 운영·관리주체의 확보와 자격제도의 정립, 직제(채용, 임용, 평정, 교육·훈련, 승진, 대우 등)의 확립, 직무 및 직제분석에 기반한 전문직성과 사회적 위상에 대한 불만의 파악, 직제개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한다. 그러나 개편방안에서의 사서직제는 '도서관 및 관련기관에 근무하는 사서직 공무원의 직무 또는 직위에 관한 제도'로 한정한다.

③ 사서직제 개선방안의 키워드는 직군·직렬·직류·직급이며,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제5조 7호의 각호에서 규정한 개념을 적용한다. 가령, 직군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직렬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직류는 '동일한 직렬 내에서의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을 말한다. 요컨대 직군은 직렬의, 직렬은 직류의, 직류는 직무의 합집합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계급은 등급(1~9급)을, 직급은 '직렬 + 계급'을 의미하지만, 양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④ 국내의 현행 사서직제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필요성 내지 당위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의 공직분류가 사서직의 전문(직)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그림 1〉 사서직제의 확립 및 개선과정 전모

외에도 사서직의 자격요건이나 업무성격을 감안할 때 행정직군에 예속되어야 할 이유나 명분이 약하고 사서직 관장제가 실정법에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직급의 제한으로 공공도서관 가운데 20개 이상의 2~3급 관장직에는 행정직이 보임될 수밖에 없으며, 사서직이 실제로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연수도 「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한 최저 기간과 행정직군 내의 다른 직렬보다도 훨씬 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오류와 과행이 도서관을 행정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전문적 업무에 행정논리가 무차별적으로 대입됨으로써 도서관의 정체성은 약화일로를 거듭하고 사서직은 행정직의 아류로 전락되고 있다.

⑤ 모든 사안이 그러하듯이 오름(登高)과 건넘(渡河)이 형성하는 각각 사이에는 무수한 선택지가 있다. 환언하면 사서직제의 개선방안도 최상에서 최악까지 다양한 대안이 가능하기에 몇 가지를 제시한다. 따라서 경직성 논리보

다 유연한 사유가 필요하다.

4. 2 사서직제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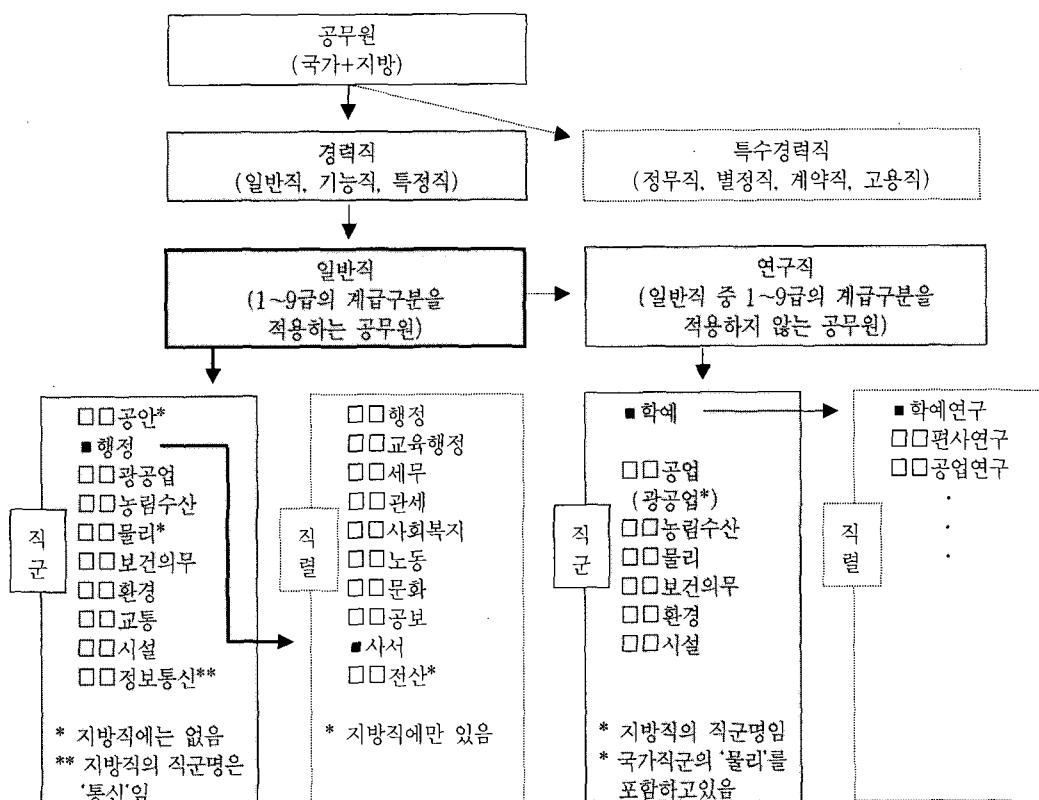
국내 사서직제의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직제를 유지하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사서직렬을 행정직군에서 분리하여 독립(단독) 직군으로 전환하는 방안, 사서직과 관련직종(학예직, 기록관리직 등)을 묶어 독립직군으로 신설하는 방안, 사서직을 학예직군 아래의 연구직렬로 이속시키는 방안, 그리고 복수직군(행정직군과 연구직군)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각각의 직제화 방법, 논리적 근거, 장점과 단점, 실현(또는 채택) 가능성, 후속조치, 우선순위 등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현행 직제(행정직군-사서직렬) 유지 + 직급의 상향 조정
이 안은 국내 공직체계를 도시한 〈그림 2〉와

같이 현행 사서직제의 골격인 ‘일반직 - 행정직군 - 사서직렬 - 사서직류’를 고수하되, 상한직급을 4급에서 2급까지 높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직제 자체를 개편하는 방안으로 간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대안으로 상정하는 이유는 사서직제의 문제점을 거론할 때 직군의 변경 못지 않게 직급의 상향 조정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서직과 행정직이 모두 선호할 개연성이 있는, 현실지향적 대안이지만 직급 상향의 경우는 행정직이 쉽게 수용할 리가 없는 난제에 속한다. 이러한 직제를 고수하는 국가는 프랑스, 일본, 대만 등이다.

이에 대한 법리적 근거는 <표 13>에 집약한

것처럼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4조 제1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는 규정이며, 실제로 정독도서관장의 직급은 2급(이사관), 광역지자체에 존재하는 20여개 공공도서관장은 3급(부이사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각각 제3조 제1항 ‘별표 1’에서 사서직의 상한직급을 4급(사서서기관)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관장직에는 행정직이 보임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8399호) 제39조(지원연수부) 제1항(지원연수부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



<그림 2> 일반(행정·연구)직 공무원 중 사서직 및 학예직의 직렬구성

〈표 13〉 제1안(현행 직제의 유지 + 사서직급의 상향조정)의 전모

개선방안	논리적 근거와 당위성	평가(장단점)	후속조치
제1안 현행 직제 (행정직군- 사서직렬) 유지+사서 직급의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법령의 법리적 모순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4조 제1항(사서직 관장제)과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1항 「별표 1」(사서직의 상한 직급의 4급(사서서기관)으로 제한)의 불합치로 인한 정독도서관(2급), 광역지자체의 20여개 공공도서관(3급)의 관장직에 행정직이 보임되고 있음. 하위법령의 내용이 상위법률을 위반하고 있음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에 대비한 도서관의 정체성 확립과 전문성 강화 : 현재 3급 이상의 관장을 보임하는 대다수 공공도서관은 광역지자체의 대표도서관이며, 이들이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도서관 정책기능과 자료보존기능을 수행하고 기초지자체(시·군·구)의 도서관들을 지원·지도하려면 지방박물관장의 자격요건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직의 반발을 무마하는 현실적인 대안임 직급 상향에 따른 사서직의 사기진작이 가능함 그러나 행정직의 아류로 존속할 수밖에 없음 도서관 및 사서직의 정체성 확립에 부정적임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개정(사서직렬의 직급을 2급까지로 상향)

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과 제40조(열람관리부) 제1항(열람관리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로 인하여 전문성을 요구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부장직에서도 재연되고 있다.

이처럼 하위법령이 상위법률을 위반하는 법리적 모순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며, 그 방법으로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4조 제1항의 「사서직」을 과거처럼 「복수직(사서직 또는 행정직)」으로 개정하든지, 아니면 「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한 사서직렬의 상한직급을 2급까지로 높여야 한다. 물론 후자가 전자보다 더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3급 이상을 관장직에 보임하도록 규정한 대다수 공공도서관은 광역지자체의 대표도서관이며, 이들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도서관 정책기능과 자료보존기능을 수행하고 기초지자체(시·군·구)의 도서관들을 지원·지원해야 하므로 관장직에도 지방박물관장의 보임 기준(연구관)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해당조항을 「복수직」으로 환원하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한 사서직급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사서직제 개선의 궁극적 목적이 행정직과 차별화되는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행정직군에 존속시키는 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으로 간주할 수 없다. 비록 행정직의 거센 반발을 약화시키는 현실적인 대안이며, 직급의 상향조정에 따른 사서직의 사기진작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서직이 행정직의 아류로 존속할 수밖에 없으며, 도서관 및 사서직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후술할 어떤 대안도 수용되지 않는다면 행정직군 내에서 2급까지의 직급 상향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실현시키는데 진력해야 한다.

(2) 사서직렬의 사서직군(단독직군)화

국내의 학자집단이나 연구보고서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안된 제2안은 현행 직제(일반직 - 행정직군 - 사서직렬 - 사서직류)에서 사서직렬을 격상시켜 단독직군(사서직군-사서직렬)

으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에 하나의 직군을 형성하려면 복수의 직렬이 필요하므로 사서자격증을 기준으로 상급사서와 일반사서, 학위종별에 따라 주제전문사서와 일반사서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직급은 제1안과 마찬가지로 최상위 2급까지로 개정하는 것을 전체로 한다. 이러한 편제의 사례로는 일반직종을 행정직군(Administration Group), 경제직군(Economist Group), 통계직군(Statistician Group), 정보직군(Information Officer Group), 사서직군(Librarian Group)으로 대별한 영국을 들 수 있다.

이 방안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표 14>에 집약한 것처럼 사서직이 행정직군 산하의 다른 직렬과 달리 정보수집·가공 및 제공, 주제분석, 연구·조사, 교육 등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이다. 또한 전문직군화는 도서관이 인류의 지식문화를 집적한 타입캡슐 및 게이트웨이로서의 정체성과 사서직이 다종다양한 정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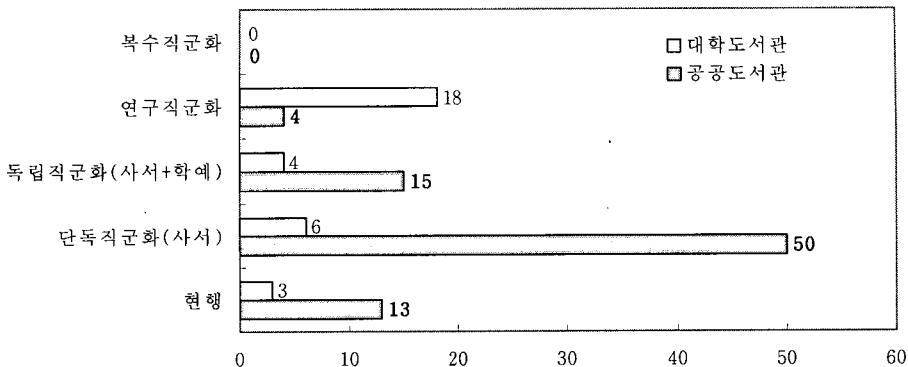
료를 수집·제공·보존·전수하는 주체로서의 전문(직)성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그 외에도 외국 사례에서 논거를 찾을 수 있다. 상술한 영국 외에도 미국의 현행 직제는 '도서관·문서관'을 23개의 독립직군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약 5천명을 상회하는 사서직원이 존재하므로 사서직을 독립직군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이 결코 무리는 아니다.

그 이유는 예컨대 편사연구직렬(연구직·학예직군)은 국시편찬위원회에만 있고, 기상연구직렬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기상연구소, 지방기상청)에만 존재하며, 건축연구직렬은 행정자치부 소속의 국립방재연구소 직제에만 있으며, 그 인원도 '연구관, 건축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이라는 복수 직급 1명⁴⁾으로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현직자를 대상으로 조사⁴⁾한 결과, <그림 3>처럼 총 113명의 응답자 중 56명(49.6%) 가 제2안(사서직의 단독 직군화)을 가장 선호

<표 14> 제2안(사서직렬의 사서직군화 + 직급의 상향조정)의 전모

개선방안	논리적 근거와 당위성	평가(장단점)	후속조치
제2안 사서직렬의 사서직군(단 독직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서직은 행정직군 산하의 다른 직렬과 달리 정보수집·가공 및 제공, 주제분석, 연구·조사, 교육 등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함 · 도서관이 인류의 지식문화를 집적한 타입캡슐로서의 정체성을, 사서직이 다양한 정보자료를 수집·제공·보존·전수하는 주역으로서의 전문(직)성을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임 · 현행 공직분류(직군-직렬-직류)의 개별적 사례와 사서직원의 수를 감안하면 독립직군화가 불 가능한 사안이 아님 · 외국의 사례 : 영국은 1991년까지 사서직군이 독립직군으로 존재하였으며, 미국은 현재 '도서관·문서관'을 독립직군으로 분류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서직의 정체성과 사회적 위상 제고 · 사서직에 대한 평가절하의 시각과 인식의 불식 · 사서직 관광체의 정착과 승진 적체의 해소 · 행정직의 거센 반발이 예상됨 ·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함 · 사서직은 일반직 공무원이므로 정보(문화)논리보다 행정(경제)논리가 우선할 개연성이 있음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 및 자치조례(규칙)의 관련조항 개정

4) 이 연구를 위하여 2004년 전국도서관대회(부산)에 참석한 사서직원(직제개선의 당사자들인 국립대학 및 공립공공도서관 사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조사·분석한 것임.



〈그림 3〉 사서직제 개선에 대한 공공 및 대학도서관 직원의 응답결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2안의 실현가능성은 1안보다 더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큰 이유는 행정직의 입장에서 국립중앙도서관 부장직과 공공도서관 관장직이 사서직의 전유물로 전환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년 말 현재 공립공공도서관(432개)의 관장직은 사서직이 215명(49.8%), 일반직이 217명(50.2%)이다. 이를 더 세분하면 시·도교육청 소속의 총 220개관 중에서 82%(180명)가 사서직 관장인 반면에 시·도청 소속의 총 212개관 가운데 사서직 관장의 비율은 17%(35명)에 불과하다. 이른바 초법적 보직인사가 전국의 공공도서 관계에서 자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주무부처가 지자체의 법률위반 행위를 묵인하고 도서관계 와 이해당사자도 행정소송 등과 같은 법적 대응을 외면하고 있다.

사서직렬이 사서직군으로 격상되고 직급이 상향 조정된다면 당연히 사서직의 정체성과 사회적 위상도 제고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행정직의 사서직에 대한 평가절하의 시각과 인식이 불식되고, 사서직 관장제가 정착될 뿐만 아니라

승진직체를 해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사시 진작과 역량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서직은 일반직 아래의 11개 직군 중의 하나에 예속되므로 연구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또한 도서관이 강조해야 할 정보(문화)논리보다 행정(경제)논리가 우선 적용될 개연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동법 시행령과 지자체별 자치 조례 및 규칙 등의 관련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어느 하나도 쉽지 않지만, 정치력과 논리적 설득을 겸하면 결코 불가능한 대안은 아니다.

(3) 가칭 '기록문화직군(기록정보직군)'의 신설

도서관계를 비롯한 기록문화를 취급하는 박물관·미술관·문서관계의 인식전환과 견고한 연대를 필요로 하는, 파격적인 개선모형이 제3안이다. 그 골자는 행정직군에 예속된 사서직렬

과 연구직 내의 학예직군, 그리고 아직 직제가 확립되지 않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둑어 가칭 '기록문화직군' 또는 '기록정보직군'을 신설하는 것이다. 요컨대 지식정보 내지 지적 문화유산을 취급하는 직종을 군집하여 독립직군으로 신설하고 그 아래에 3개 직렬(문헌정보, 학예, 기록관리)로 구성하는 방안을 말한다. 이를 대표하는 사례는 미국의 '도서관·문서관' 직군을 들 수 있다.

다른 대안과 비교할 때, 가칭 '기록문화(정보)직군'의 신설은 <표 15>에 집약한 바와 같이 현실적 및 법리적 논거가 매우 풍부할 뿐만 아니라 분명하고 설득력도 있다. 이를 반증하는 사례는 각국의 표준직업분류, 법률 및 행정조직의 명칭, 지적 문화유산기관의 기능과 속성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각국의 표준직업분류상 사서직·학예직·기록관리직은 동일한 분류항목(미국 : 25-4000 Librarians, Curators, and Archivists ; 영국 : 245 Librarians And Related Professionals, 프랑스 : 351a Bibliothécaires, archivistes, conservateurs et autres cadres du patrimoine ; 중국 : 2-12-06 圖書資料與檔案業務人員 ; 대만 291 文物管理師·圖書管理師及有關資訊專業人員 ; 한국 :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에 군집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미국과 영국은 도서관과 박물관을 단일의 법률(미국의 Museum and Library

Service Act, 영국의 Public Libraries and Museums Act)에서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도 종래의 국가도서관법을 폐지하는 대신에 2004년 2월 11일자로 국가도서관(NLC)과 국립문서관(NAC)을 통합한 「국가도서관문서관법」(LACA :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여러 국가의 정부조직 및 관련기구에서도 도서관과 박물관의 밀착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가령 1996년 「Omnibus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미국의 IMLS(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는 도서관 및 박물관을 위한 연방자금을 관리하는 독립기구이고, 영국의 도서관 행정과 정책기능을 주관하는 중앙정부(DCMS) 산하의 주무부서가 '박물관·미술관·도서관·유산국'(Museum, Galleries, Libraries & Heritage Group)이며, 도서관정책 자문기구의 명칭도 MLA(The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이다.⁵⁾ 2004년에 폐지된 국내 문화관광부의 주무부서도 '도서관·박물관과'이었다.

그런가 하면 국내 실정법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기록물 관리기관은 모두 기록문화(정보)를 취급하는 조직체이다.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하여 최근의 선진국 도서관정책에서는 도서관, 박물관, 문서관의 전략적 제휴가 신조류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그 배경은 아날로그 시대에 국가나 지역사회의 문화유산을 수

5) 2000년 4월에 과거 LIC/Library and Information Commission)와 MGC(Museums & Galleries Commission)를 통합하여 새로 발족한 MLA(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는 DCMS의 재정지원을 받는 국가 차원의 비정부개발기구이다. 이 기관은 박물관, 문서관, 도서관의 협의체(Council for Museum, Archives and Libraries)로서 당초 're:source'란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모든 기관이 '자원'을 공통분모로 하는 문화유산의 수집·보존·서비스 기관이었기 때문이다.

〈표 15〉 제3안('기록문화직군' 내지 '기록정보직군'의 신설)의 전모

개선방안	논리적 근거와 당위성	평가(장단점)	후속조치
제3안 기록문화(또는 기록정보) 직군(사서직 열 + 학예직 열 + 기록물 관리직열) 의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국의 표준직업분류상 사서직, 학예직, 기록 관리직이 동일한 항목 아래에 분류되어 있다 는 점 주요 국가의 도서관관련 법률명칭이 도서관과 박물관 또는 도서관과 문서관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점(미국의 Museum and Library Service Act, 영국의 Public Libraries and Museums Act, 캐나다의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 여러 국가의 행정조직 및 관련기구의 명칭이 도서관과 박물관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점 (미국의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영국 DCMS의 Museum, Galleries, Libraries & Heritage Group, 도서관정책 자문기구인 The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한국 문화관광부의 도서관·박물관과) 국내의 각종 법령에서 규정한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기록물 관리기관이 모두 기록문화(정보)를 취급하는 조직체라는 공통성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제5조 7호에서 규정한 직군의 정의에 충실한 방안임 사서직의 전문성과 정체성의 확립과 직결됨 유사 직종의 단일직군 군집을 통한 행정직과의 차별성 부각 직급의 상향조정이 용이함 기록문화(정보)를 담당 하는 전문직렬간의 협력과 결속력이 증대됨 사서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가치의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계적인 직무분석 을 통한 사서직과 행정직의 차별성 검증 학예직 및 기록관리 직과 직제개편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협의도출 「공무원임용령」과 「연구직 및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규정」 개정 기록문화직군의 사용에 따른 행정직 군 하위의 '문화직렬'과의 용어 조정

집·보존하고 제공하던 소위 자료중심의 문화 기관들이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별개로 존속하여 왔으나, 디지털 시대에는 각자의 수집 물이 가상공간으로 유통·이용되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자료에서 비롯된 개별적 정체성의 약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문화유산'이라는 공통분모로 수렴되기 때문이다 (윤희윤 2004, 26). 다시 말해서 소위 4대 문화 유산기관(Four Big Institutions)인 도서관, 박물관, 문서관, 미술관을 아우르는 공통분모 내지 사회적 존재가치는 자료와 보존 그리고 사회교육기능(<http://www.ariadne.ac.uk/issue22/dempsey/>)이기 때문에 연대의 당위성도 존재 한다.

그 외에도 사서직, 학예직, 기록관리직이 한 지붕 아래에 결집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수히 많다. 예컨대, 도서관과 박물관은 문화유산의 수집·보

존·이용·활용에 관한 유사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박재용, 조운희 2004, 330). 또한 미국박물관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s)의 교과과정위원회는 '사서'를 포함한 13가지 (관리위원회,관장, 학예연구원, 교육담당자, 전시디자이너, 편집인, 보존과학자, 자료관리자, 사서, 홍보기획담당자, 서무담당자, 시설관리담당자, 안전요원)를 박물관 종사자의 직렬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준학예사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에도 '서지학'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 대학의 문현정보학과가 사학과 등과 함께 석사학위의 '기록관리학 협동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실제로 1969년에 설립된 정부기록보존소(국가기록원의 전신)의 인력은 행정직 및 기능직 위주로 구성되었으나, 1984년 부산지소의 설치와 함께 사서직이 충원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 대전 청사로 이전한 후에는 충원의 범위가 역사학을

전공한 학예연구직으로 확대되었다.

제3안은 우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제5조 7호에서 각각 규정한 직군(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의 정의에 가장 충실한 방안이며, 사서직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제2안이 사서직만을 직제개선의 대상으로 상정한데 비하여 학예직과 기록관리직도 함께 고려한 점이 다르다. 그리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수의 직종을 단일직군 아래에 군집함으로써 행정직과의 차별성이 뚜렷하며, 따라서 직급의 상향 조정도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뿐만 아니라 기록문화(정보)를 수집·보존·봉사하는 전문직이라는 공통분모로 인하여 직렬간의 상호협력과 결속력이 증대됨으로써 사서직의 사회적 인식가치가 제고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요컨대 국내에서 인류의 정신문화와 기록자료를 취급하는 사서직, 학예직,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여러 논거가 반증하듯이 공직체계상 단일의 직군에 편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정교한 직무분석을 전제로 사서직과 행정직의 상이성 내지 차별성을 검증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학예직 및 기록관리직과 함께 직제개편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서직의 근거법령인 「공무원임용령」 뿐만 아니라 학예직에 적용되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기록문화직군」을 독립직군의 명칭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행정직군 하에 「문화직렬」이 존재하기 때문에 용어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다른 직

군명을 사용하거나 「문화직렬」이란 명칭을 조정해야 한다.

(4) 사서직의 학예직군 편입을 통한 연구직화

이 방안은 지금까지 다수의 전문가들이 주장한 내용으로서, 행정직군 내의 사서직렬을 연구직 아래의 학예직군으로 이속시켜 하위직렬에 사서(또는 문헌정보)직렬 및 직류를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서직의 공직분류상 체계는 「일반직 - 연구직 - 학예직군 - 사서(또는 문헌정보)직렬 - 사서직류(또는 문헌정보)」라는 계층구조를 취하게 된다. 외국의 사례로는 미국의 대학도서관이 사서직에게 교수직 내지 연구직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중국도 「圖書·檔案·資料專業幹部業務職稱暫行規定」에 의거하여, 대만은 「國立臺中圖書館潛行組織規程」 및 「臺北市立圖書館組織規程」에서 각각 연구원제도를 규정·배치하고 있다.

제4안의 가장 유력한 근거는 〈표 16〉에 집약한 바와 같이 「사서직의 연구직화가 도서관의 전문성과 사서직의 전문직성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명제, 즉 사서직이 현재와 같은 피상적 내지 명목상의 전문직에 그치지 않고 연구 기능을 강조하는 전문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특히 국내의 대학 및 전문도서관계를 염두에 두고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또한 도서관과 조직적 정체성이 유사한 박물관의 학예직이 실정법상 연구직에 편제되어 있다는 사실도 중요한 논거로 볼 수 있다. 다만 사서직이 수행하는 직무를 감안하면 연구직회의 논거나 설득력은 매우 궁색하고 취약하다. 가령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업무 뿐만

아니라 …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및 계속적인 연구와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업무”라는 논거(손정표 1994, 50)가 전문직 내지 연구직의 성격을 규정하는 단초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를 입증하는 현장연구나 반증할 수 있는 직무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장서개발에서 정보봉사에 이르는 핵심업무의 수준과 난이도가 대학도서관보다 낮은 공공도서관을 포함하여 사서직을 연구직으로 규정하거나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그것에 대한 논거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설령 제시하더라도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직의 연구직화는 많은 것을 시사하거나 함축한다. 우선 사서직이 연구중심의 전문직으로 규정됨으로써 직업사회 내지 공직체계 내에서의 차별적 정체성이 확립된다. 또한 행정논리가 팽배한 관료조직에서 나름대로의 위상과 배타적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 게다가 제1안에서 지적한 법리적 모순과 초

법적 보직인사의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사서직이 연구직으로 전환되면 다른 법령이나 직제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의 경우처럼 「연구직 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에 따라 도서관의 관장직에도 연구관(사서직)을 보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한 국내 학계와 현장의 입장은 다양한 양태로 표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계는 대학도서관을 염두에 두고 사서직의 연구직화를 주장하며, 대학도서관계도 대체로 찬성하는 양상이다. 반면에 국립중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계는 개인의 공직경험과 이해득실을 기준으로 찬성하거나 반대하고 있다. 일부는 사서직의 연구직화를 찬성하는 반면에 다른 일각에서는 연구직 공무원의 현실적 위상이 낮고 행정직에 비해 차별대우가 심하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심지어 일부 사서직원은 현재의 6단계 직급체계(사서서기보~사서서기관)에서는 그래도 공직자의 최대 매력포인트인 승진을 기대할

〈표 16〉 제4안(사서직의 연구직화)의 전모

개선방안	논리적 근거와 당위성	평가(장단점)	후속조치	
제4안	사서직의 학예직군으로의 이속을 통한 연구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서직의 연구직화가 도서관의 전문성과 사서직의 전문직성을 규정함 설정법상 도서관과 정체성이 유사한 박물관 학예직이 연구직에 편제되어 있음 도서관은 전통적 업무와 전문지식과 기술 및 계속적인 연구와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업무임 외국 사례 : 미국 연구도서관 사서직의 교수직 지위, 중국 「圖書·檔案·資料專業幹部業務職稱暫行規定」과 대만의 「國立臺中圖書館潛行組織規程」 및 「臺北市立圖書館組織規程」이 각각 연구원제를 규정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체계에서 사서직의 정체성 확립과 위상 제고 행정논리가 팽배한 관료조직에서의 독자적 위상과 배타적 영역의 확보 법리적 모순과 조법적 보직인사의 관행이 원천 차단됨 행정직의 반발로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함 연구직의 현실적 위상과 차별대우에 입각한 도서관계의 반대논리도 실재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서직의 관료조직적 습성과 ‘사서직=행정직’ 내지 ‘사서직<행정직’으로 평화하는 왜곡된 사고에 대한 성찰 사서직무의 전문성과 연구성 입증 학예사 자격요건을 벤치마킹한 사서자격제도의 재정비 내지 개선이 필요함 관계법령의 개정노력을 통한 연구직 공무원 직급(2단계)의 다단계화가 요구됨

수 있지만 연구직의 직급은 2단계(연구관과 연구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직생활의 동기부여나 기대심리를 봉쇄한다는 논리를 들어 연구직화를 비판하고 있다.

비록 사서직의 연구직화는 그 논거의 취약성을 해소하고 부정적인 입장은 취할 수밖에 없는 동인을 추출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또 하나의 바람직한 대안으로 간주할 수 있다. 우선 도서관계는 법제에서 발원·고착된 사서직에 대한 왜곡된 사고, 즉 '사서직=행정직' 내지 '사서직<행정직>'이라는 현실의 포박을 뛰어넘는 성찰이 필요하다. 또한 사서직이 수행하는 모든 직무에 대한 난이도, 전문성, 연구지향성 등을 다각도로 분석·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 사서자격은 학예사의 자격요건과 시험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재정비해야 한다. 한편 제도적 측면에서는 연구직 공무원과 연대하여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및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2단계의 직급체계(연구관과 연구사)를 일본과 대만처럼 4~5 단계로 확장해야 한다.

(5) 사서직의 자격증별 복수 직군화

마지막으로 제5안은 사서직의 공직체계상 위치를 자격증별로 복수 직군화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자격제도 하에서는 1~2급 정사서를 '연구직 - 학예직군 - 사서(또는 문헌정보)연구직렬'에 편성시키고 1급 정사서를 사서연구관, 2급 정사서를 사서연구사로 규정하는 반면에 준사서는 일반직 - 행정직군 - 행정직렬'에 배정하는 것이다. 다만 「박물관및미술관법」 제6조 제2항이 학예사의 자격요건을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로 구분한 것처럼 사서자격제도를 현행 3 단계에서 4단계(1~3급 정사서, 준사서)로 개선하거나 국가고시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자격요건에 따라 복수 직군화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 개선방안의 논거는 <표 17>과 같이 사서직의 공직상 위치와 성격을 자격수준별로 구분할 경우에 그 정체성의 혼란과 왜곡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도서관계가 수 차례에 걸쳐 사서직의 전문직적 정체성을 확립할 목적으로 법제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다. 그 과정에서 직면한 반발이나 부정적 시각의 저변

<표 17> 제5안(사서직의 복수 직군화)의 전모

개선방안	논리적 근거와 당위성	평가(장단점)	후속조치
제5안 사서직의 자격증별 복수 직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서자격 수준별 공직위치와 성격의 구분으로 전문직성 시비가 차단되며, 특히 정체성의 혼란과 왜곡을 회피할 수 있음 도서관 및 사서직의 연구활동과 역량이 제고되고 그 결과가 직무수행에 반영될 수 있음 국내 실정법상 농림수산, 임업, 보건 의무 등의 공직이 복수의 직군으로 편제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직의 전문성 강화, 도서관 운영·관리의 정상화, 사서직의 연구기능 활성화 및 정체성 확립 등에 유리함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회박하며, 후순위의 대안임 사서직의 개인적 입장과 이기심, 연구직의 현실적 위상 약화와 차별대우에 입각한 반대논리도 상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의 존재가치를 극대화하는 주체로서의 의지와 노력 도서관의 전문적 및 비전문적 업무의 체계적 분석 사서자격제도의 재정비 내지 개선 연구직 직급의 다단계화

에는 자격제도의 허술함과 더불어 전문대학 수준의 학력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준사서가 사서직의 일부를 구성하는데 따른 평가절하의 시각이 자리잡고 있었다. 환언하면 준사서가 포함된 사서직이 무슨 전문직이며, 어떻게 연구직화 내지 전문직화를 주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것은 사서직의 전문직성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최대의 아킬레스건이 준사서 제도입을 반증한다. 따라서 자격증별로 직군 편제를 달리하면 비판적 시각의 상당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다. 일각에서 학예직의 경우, 준학예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왜 사서직만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으나, 전혀 상황이 다르다. 「박물관및미술관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에서 준학예사는 '학사학위 취득 + 준학예사 시험의 합격 + 실무경력 1년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서직의 2급 정사서 자격요건보다도 높다. 그리고 농림수산·임업·보건의무 등의 직종이 공직체계상 복수의 직군에 편제된 사례도 사서직의 복수 직군화가 전혀 불가능한 사안이 아님을 시사한다. 예컨대 농림직의 경우, 일반직(농림수산직군 - 농업직렬 - 일반농업직류), 연구직(농림수산직군 - 농업연구직렬 - 농업직류), 지도직(농림수산직군 - 농촌지도직렬 - 농업직류)으로 다분화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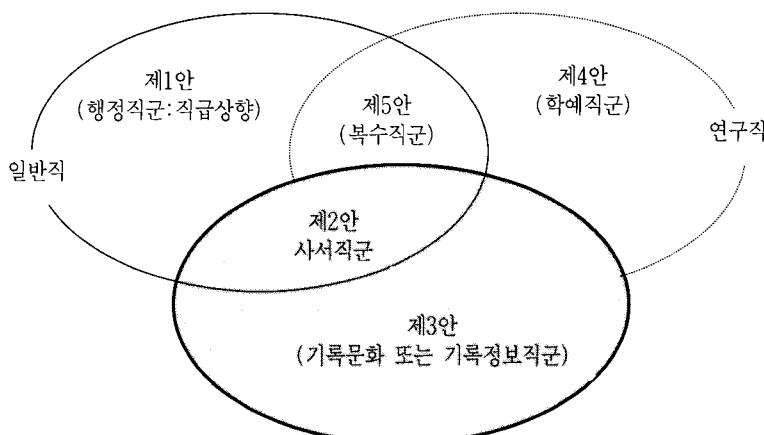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사서직의 복수 직군화 방안은 관장직의 전문성 강화, 도서관 운영·관리의 정상화, 사서직의 연구기능 활성화 및 정체성 확립 등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사서직제에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설령 도입되더라도 연구직에 속한 사서직의 직급을 다단계로 개정하고 행정논리

를 우선하는 조직문화를 바꾸지 않는 한 사서직의 위상과 사기는 더 추락할 수도 있다. 또한 사서직은 도서관의 일상적 실무와 연구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중압감도 배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복수 직군화는 사서직의 전문직성 확립이라는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사서가 개인적 입장과 이기심을 앞세우거나, 학예직이 겪고 있는 부당한 대우나 자격수준에 미달하는 업무분장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 방안이 도입되려면 제4안에서 논급한 여러 후속조치가 선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관건은 도서관의 본질적 존재가치를 극대화하는 주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의지와 노력이다. 그것의 총화만이 직제의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고 사서직의 전문직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다.

이상으로 현행 사서직제의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제안하였다. 제1안은 현행 사서직제(일반직 - 행정직군 - 사서직렬 - 사서직류)를 유지하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제2안은 현행 직제에서 사서직렬을 격상시켜 단독직군(사서직군-사서직렬)으로 개편하는 방안, 제3안은 사서직과 관련직종(학예직, 기록관리직 등)을 묶어 가칭 '기록문화(또는 기록정보)직군'을 신설하는 방안, 제4안은 사서직을 학예직군으로 이속시켜 연구직화하는 방안, 그리고 제5안은 사서직을 자격증별로 복수 직군화하는 방안이다. 이들의 상호관계를 도시하면 <그림 4>와 같다.

그 중에서 직제화 방법, 논리적 근거, 장점과 단점, 실현(또는 채택) 가능성, 후속조치 등을 감안하면 제3안(사서직, 학예직, 기록관리직을 통합한 가칭 '기록문화직군 또는 기록정보직군'



〈그림 4〉 사서직제 개선방안의 상호 관련성

의 신설)이 논리적 명분과 현실적 실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그 이유는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기록물 관리기관이 모두 기록문화(정보)를 취급하는 조직체라는 공통분모를 내포하고 있어 통합의 명분과 당위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묶어 단일직군으로 격상시킴으로써 행정직군과 차별화되는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대안은 사서직렬을 격상시켜 단독직군(사서직군-사서직렬)으로 개편하는 제2안이다. 비록 실현 가능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사서직을 단독직군화할 경우, 제3안에 못지 않은 정체성을 확립하고 실리를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세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현재의 직제를 유지하되 사서직의 상한 직급을 2급까지 높이는 방안인데, 사서직제 개선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서직의 연구직화(제4안) 및 복수직군화(제5안) 방안은 모든 관종을 포괄할 경우에 무리가 따르고 아직은 논리적 근거도 취약하며 설령 학예직군으로 이속되어 연구직렬을 형성하

더라도 학예직에 대한 행정직의 차별적 대우가 사서직에게 적용되거나 전가될 개연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5. 결론 및 제언

사서직은 도서관 운영관리의 주체이며, 그들을 위한 법령상 직제는 도서관 및 사서직의 존재이유와 사회적 위상을 보증하는 제도적 수단이다. 그러므로 사서직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될 때 그들은 자국의 통시적 및 공시적 지식정보를 수집하여 축적·보존·제공·전수하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직업적 위상과 자긍심도 제고될 수 있다. 요컨대 사서직제는 도서관의 사회적 정체성과 사서직의 공직상 전문직성을 결정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서직 공무원의 전문직성을 확립하려면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가'를 좌고우면하면서 직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집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안은 현행 직제(행정직군-사서직렬)를 유지하되, 사서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다시 말해서 현행 사서직제의 골격인 '일반직 - 행정직군 - 사서직렬 - 사서직류'를 고수하되, 상한직급을 4급에서 2급까지 높이는 것이다. 제2안은 사서직렬을 격상시켜 사서직군(단독직군)화하는 방안이다. 이 대안은 국내의 대다수 학자집단이나 연구보고서가 제안하였으며 사서직 공무원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서, 현행 직제(일반직 - 행정직군 - 사서직렬 - 사서직류)에서 사서직렬을 격상시켜 단독직군(사서직군 - 복수의 사서직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제3안은 가칭 '기록문화직군(기록정보직군)'의 신설을 통한 독립 직군화이다. 이 대안은 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서관계의 인식전환과 연대를 필요로 하는, 소위 파격적인 개선모형으로서, 행정직군에 예속된 사서직렬과 연구직 내의 학예직군, 그리고 아직 직제가 확립되지 않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둑어 가칭 '기록문화직군' 또는 '기록정보직군'을 신설하는 것이다. 요컨대 지식정보 내지 지적 문화유산을 취급하는 직종을 군집하여 독립직군으로 신설하고 그 아래에 3개 직렬(문헌정보, 학예, 기록관리)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제4안은 사서직을 학예직군에 편입시켜 연구직화하는 방안이다. 이 대안은 다수의 전문가가 주장한 내용으로서, 행정직군 내의 사서직렬을 연구직 아래의 학예직군으로 이속시켜 사서(또는 문헌정보)직렬 및 직류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서직의 공직체계는 '연구직 - 학예직군 - 사서(또는 문헌정보)직렬 - 사서직류(또는 문헌정보)'라는 계층구조를 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제5안은 사서직의 자격증을 기준으로 복수 직군화하는

방안이다. 부언하면 현행 자격제도 하에서는 1~2급 정사서를 '연구직 - 학예직군 - 사서(또는 문헌정보)연구직렬'에 편성시키고 1급 정사서를 사서연구관, 2급 정사서를 사서연구사로 규정하는 반면에 준사서는 일반직 - 행정직군 - 행정직렬'에 배정하는 것이다. 다만 현행 사서자격제도를 학예사 자격요건처럼 4단계(1~3급 정사서, 준사서)로 개선하거나 국가고시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복수 직군화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5가지의 개선방안 중에서 직제화 방법, 논리적 근거, 장점과 단점, 실현(또는 채택) 가능성, 후속조치 등을 감안하면 제3안(사서직, 학예직, 기록관리직을 통합한 가칭 '기록문화직군 또는 기록정보직군'의 신설)이 논리적 명분과 현실적 실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다. 그 다음으로 우선해야 할 대안은 사서직렬을 격상시켜 단독직군(사서직군 - 사서직렬 등)으로 개편하는 제2안이다. 비록 실현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사서직을 단독 직군화 할 경우, 제3안에 못지 않은 정체성을 확립하고 실리를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세 번째의 선택대안은 현행 직제를 유지하되 사서직의 상한 직급을 2급까지 높이는 방안인데, 사서직제 개선의 마지노선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 이유는 모든 사서직 공무원을 포괄하는 연구직화(제4안) 및 복수직군화(제5안) 방안은 아직 논거가 취약하며 설령 연구직렬을 형성하더라도 학예직에 대한 행정직의 차별적 대우가 사서직에게 적용되거나 전가될 개연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서직제의 재정립, 이 해묵은 난제를 해결하려면 도서관계의 다각적인 안식, 사고의 유연성, 그리고 주체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무

엇보다도 공직체계의 논거와 제약성, 관련법제와 조작문화, 도서관의 이론과 현장을 교차 분석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서직은 망원경(telescope)을 통하여 안목을 확장하고 현미경(microscope)을 이용하여 시선을 넓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登高(사서직의 정체성과 전문직성의 제고)와 渡河(도서관의 사회적 인식

과 지평의 확장) 사이에 무수한 銳角(사서직제 개선을 위한 선택지)이 존재한다는 사실, 즉 사유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요컨대 사서직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는 사고의 편협성과 무임승차하려는 의타심을 극복하지 않는 한 직제개선을 통한 도서관의 지평 확장과 사서직의 전문직성 제고는 요원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國公立大學圖書館協議會. 2004.『國公立大學圖書館協議會四十年史：1962~2002』. 春川：同協議會.
- 김병모 등. 1999.『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제도 연구』. 서울：한국문화정책연구원.
- 김세훈. 2003.『도서관 전문성 강화 방안：사서전문성을 중심으로』. 서울：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大谷 康晴. 2004. 公共圖書館職員を對象とした「上級司書」認定と専門性評價. 『専門圖書館』, 206: 6-13.
- 박재용, 조윤희. 2004. 도서관/박물관 협력체제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2): 315-333.
- 孫正彪. 1980. 公共圖書館 職制模型에 관한理論的 考察: 組織構造의 理論的 模型과 관련하여.『도서관보』, 5호: 37-54.
- 孫正彪. 1986. 國立大學校 圖書館關係 基準模型에 관한 研究: 國立大學校 現況과 관련하여.『文獻情報學報(全南大)』, 2: 5-34.
- 손정표. 1994.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직원구분에 관한 고찰: 외국의 대학도서관 현황과 관련하여.『慶北大學校 文獻情報學科 創立二十周年 紀念論文集』: 19-58.
- 藥師院はるみ. 2004. 専門職論と司書職制度：準専門職から情報専門職まで.『圖書館界』, 56(1): 2-12.
- 유동렬. 1978. 우리나라 大學圖書館行政에 관한 研究: 國立大學司書職의 人事行政을 中心으로.『行政論叢(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6(1): 207-225.
- 윤희윤. 2004. 도서관정책의 신조류와 시사점.『國會圖書館報』, 34(4): 16-30.
- 윤희윤. 2004. 지방분권과 공공도서관의 향방.『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4): 25-48.
- 이근주, 윤수재, 김종무. 2003.『국립중앙도서관의 합리적 조직개편 및 인력운영방안 연구』. 서울：국립중앙도서관.
- 이두영 등. 1990.『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문화부.
- 조영삼. 2002. 전문직렬제도의 현상과 기록연구 직렬.『제3회 기록학 심포지움』: 51-67.

-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 편.
2003. 『한국도서관기준: 2003년판』. 서울: 동협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3. 『도서관 발전정책 및 행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 동연구소.
- 한상완. 1987. 도서관 및 정보자료센터의 전문 요원 양성학보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고찰. 『도서관』, 42(3): 5-23.
- 한상완. 1981. 韓國專門圖書館司書職制 評價分析. 『韓國專門圖書館研究』, 創刊號: 3-18.
- 현규섭. 1971. 공무원 임용령 중 사서직급에 관한 행정 연구. 『도서관』, 26(5): 8-15.
- Corcoran, Mary, Lynn Dagar, and Anthea Stratigos. 2000. "The Changing Roles of Information Professionals: Excerpts from an Outsell, Inc. Study." *Online*, 24(2): 76-78.
- Crawford, Walt and Michael Gorman. 1995. *Future Libraries: Dreams, Madness & Reality*. Chicago: ALA.
- Danner, Richard A. 1998. "Redefining a Profession." *Law Library Journal*, 90: 315-356.
- Dempsey, Lorcan. 1999. "Scientific, Industrial, and Cultural Heritage: A Shared Approach : A Research Framework for Digital Libraries, Museums and Archives." *Ariadne*, 22 [online] [cited 2005. 3. 20]
<http://www.ariadne.ac.uk/issue22/dempsey/>

-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Libraries, Information and Archives
Division. 2001. *Comprehensive, Efficient and Modern Public Libraries: Standards and Assessment*. [online] [cited 2004. 11. 25]
http://www.culture.gov.uk/PDF/libraries_pls_assess.pdf
-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2001. *Libraries, Museums, Galleries and Archives for All: Co-operating Across the Sectors to Tackle Social Exclusion*. London : DCMS.
- Dominique, Arot. 2000. "Les Valeurs Professionnelles du Bibliothécaire." *Bulletin des Bibliothèques de France*, 45(1): 33-41.
- Dupré, Deirdre. 2001. "The Perception of Image and Status in the Library Profession." *New Breed Librarian*, 1(4) [online] [cited 2004. 11. 20]
<http://www.newbreedlibrarian.org/archives/01.04.aug2001/feature2.html>
- Find, Søren. 1999. "Changing the Culture: Job Design, Work Processes and Qualifications in the Hybrid Library." *IFLA Journal*, 25(4): 237-239.
- Gorman, Machael. 2000. *Our Enduring Values: Librarianship in the 21st Century*. Chicago: ALA.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2001. *The*

- Public Library Service : IFLA/UNESCO Guidelines for Development.* München: K.G. Saur.
- Mulins, James L. 1989. "Faculty Status of Librarians: A Comparative Study of Two Universities in the United Kingdom and How They Compare to the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Standards." In *Aca-*
demic Librarianship : Past, Present, Future. Davis. Englewood: Libraries Unlimited.
- Patrick Villa, comp. and ed. 2002. *An Investment in Knowledge: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in the United Kingdom.* London: CILIP and the British Council.